

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·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서

한국자활복지개발원(이하 “개발원”이라 한다)과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는 상호 신뢰와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업무협약은 “개발원”과 “공사”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고령자·장애인 등 주거약자 생활 맞춤형 주택수선 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“개발원”과 “공사”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,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.

1. 수선유지급여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및 일자리 창출
2. 고령자·장애인 등 주거약자 생활 맞춤형 주택수선 교육
3. 수선유지급여 사업 성과의 온·오프라인 홍보
4. 수선유지급여 우수업체 및 우수직원 포상
5.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한 동반성장·상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

제3조(비밀유지) “개발원”과 “공사”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협약의 목적 외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4조(협의조정) 본 업무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제5조(업무협약 개정 및 해지) "개발원"과 "공사"는 대·내외적으로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, 상호 협의를 거쳐 본 업무협약에 대한 합의 개정 또는 임의 해지할 수 있다. 단, 업무협약의 개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·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(효력, 유효기간) ①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여,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
② 본 협약 내용은 협약 당사자 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으며, "개발원"과 "공사"와의 구체적인 권리·의무에 대한 추가 협조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 및 별도 계약에 따라 정한다.

본 업무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본 업무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1년 2월 26일



한국자활복지개발원

원 장 이 병 학

이 병 학



한국토지주택공사

주거복지본부장 서 창 원

김 경 철